## 장학금 지급 규정

제정 : 1998. 6. 2.

17차 개정 : 2025. 1.03.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라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「학칙」 제78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의 지급은 관련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심의기구)**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 ② 장학업무는 학생처장이 관장한다.

#### 제2장 장학위원회

- 제4조(위원회의 설치와 구성)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위원회는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입학홍보처장, 각 학과(부)장으로 구성한다.
  - 2.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  - 3.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생지원과 장학담당이 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장학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
- 2. 장학 종별 인원 및 지급액 배정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

#### 제3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
- 제6조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)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  - ②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〈별표1〉과 같다.
  - ③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, 기업체, 사회단체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기부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정해지지 않았거나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득, 성적, 고학년, 학과(부)별 비율 등을 참작하여 학생처장이 결정한다.
- 제7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장학금은 수업연한 내 정규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. 단, 근로장학금, 리더십장학금, 봉사장학금, 한라 FAMILY CARE 마일리지 장학금은 초과학기의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23.12.29.)
  - ②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〈별표1〉의 기준을 따른다.
  - 1.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  - 2.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
  - 3. 학교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자

- 4. 본교 교직원의 직계 자녀
- 5.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 학생
- 6. 보훈 대상자 및 그 직계 자녀
- 7. 총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
- **제8조(장학금 지급제한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다.
  - 1. 미등록 휴학
  - 2. 제적
  - 3. 교내에서 직전학기 징계처벌을 받은 자 (개정 2022.2.22.)
  - 4.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자
  - 5. (삭제 2022.2.22.)
  - 6.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각 장학금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자
  - 7. 학사학위취득유예자
  - ② 교직원자녀 장학금, 리더십 장학금 및 특별 장학금은 제1항 제6호의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. (개정 2025.1.03.)
- **제9조(장학금 신청)** ①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장학금을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, 소급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
  - ③ 등록금고지서에 선감면 처리되는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학과추천 및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록금고지서에 우선감면 처리한다.
  - 1. 성적우수장학금
  - 2. 필수장학금 : 보훈자녀장학금, 토익성적우수장학금, 교직원자녀장학금, 한라복지장학금, 축구부 우수선수장학금, 학습동기부여장학금, 입학성적우수장학금 등 (개정 2020.4.2., 2023.12.29.)
  - 3. 외국인장학금 : 외국인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 등 (신설 2022.2.22.) (개정 2023.12.29.)
  - ④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와 장학금 수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⑤ 외국인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은 국제협력본부에서 추천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. (신설 2022.2.22.) (개정 2023.12.29.)
- 제10조(장학생 선발) 학생처장은 각 학과(부)에서 추천된 학생 중 장학 종류별 선발 기준 등에 따라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.
  - ② 장학생 선발 시에는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단, 학생처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거나 제6조제3항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제11조(지급 기준액) ① 본교의 장학금 지급 기준액의 산정은 이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  - ②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
  - 1. 근로장학금
  - 2. 생활비지원장학금
  - 3. (삭제 2025.1.03)
  - 4. 총장표창장학금
  - 5. 특별장학금
  - 6. 학습역량강화 장학금
  - 7. 글로벌인재 장학금
  - 8. 한라 FAMILY CARE 마일리지 장학금 (개정 2023.12.29.)

- 9. 봉사장학금
- 10. 학생활동장려장학금
- 11. 리더십장학금
- 제12조(지급방법) ① 학비감면 대상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금고지서에 우선감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가족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확인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.
  - ② 학비감면 이외의 장학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.
  - ③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학생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3조(지급기한) 장학금 지급기간은 당해 학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
- 제14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특기자장학금 관련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장학위원 및 특기자장학금 관련 사항은 2004 년 3월 1일 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제14조(성적우수 장학금)은 201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최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4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 1〉(개정 2020.4.2., 2023.12.29., 2024.8.10., 2024.10.31., 2025.1.03.)

#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

(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관련)

구분	장학금종류	지급 기준 및 장학금액	제출서류
한라희망 장학금 (소득기준)	한라사랑 장학금	① 국가장학금 신청결과 소득분위 0~5분위 이내인 자 ※ 국가장학금 I∘II 유형 지원 대상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경제적 사정 곤란자로 정의하나 한라사랑장학금은 이중 소득분위 0~5구간 이내인 자에게 지급함. ② 직전학기 백분율 70점이상(소수점이하절사) ③ 장학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	
	한라인재 육성 장학금	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며,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	*장학금추천서
	생활비지원 장학금	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학생생활관 입사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	
한라성적 우수 장학금	입학성적 우수 장학금	입학당시 1년 이상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3.5이상인 자	
	성적우수 장학금	① 직전학기 성적 과락(F)없이 3.5이상, 직전학기 15학점이상 이수자 (4학년은 12학점)중 토익성적 기준 통과자. 단, 토익성적이 없을 경우 최대 50% 까지만 지급한다.(개정 2025.1.03.)	
	외국인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	국제협력본부에서 추천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한다.	
	학습동기부여	① 직전학기 과락 없이 18학점이상(2017년 입학생 이후 16학점) 이수한 자로서 평점평균이	

장학금 (2) 직전학기 학사경고의 경우 1.0점 이상 향상되고, 평점평균이 2.0이상 인 자 ③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하며, 4학년은 제외 ④ 장학금액은 공학, 예체능계열: 100만원, 인문사회계열: 80만원 (개정 2025.1.03.)	장학금	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	--

구분	장학금종류	지급 기준 및 장학금액	제출서류
기타 장학금	리더십장학금	중앙자치기구(총학생회, 총대의원회, 총동아리연합회, 신문방송국, 응원단), 학과(부) 학생회, 기타 학생자치기구 간부에게 지급한다.	
	가족장학금	① 본교에 부부, 형제자매 및 직계가족이 함께 재학 중이고, 직전학기 성적이 2.0이상인 자② 해당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게 지급한다. 단,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경우 구성원에서 제외한다. ③ 결혼 등으로 한 가족이 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 다음 학기부터 지급한다. ④ 장학금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. (개정 2025.1.03.)	*장학금신청서 *주민등록등본 *통장사본
	근로장학금	①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분위 0분위 ~ 9분위이내,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선발한다. (개정 2025.1.03.) ② 국가근로장학금 시급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침을 따른다. ③ 교비로 지급되는 근로장학금은 소득, 성적에 상관없이 해당부서에서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. (개정 2025.1.03.)	*근로장학금신청서
	총장표창 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사회봉사 등으로 모범이 되어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.	
	보훈장학금	①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, 그 직계자녀로서 보훈지청에서 발급되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 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생에게 지급한다. ②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의 경우에는 수업연한이나 성적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, 등록금 전액을 감면하고, 직계자녀의 경우에는 학칙 제3조에서 정하는 수업연한 이내에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이상인 자에게 국고보조금 50%를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.	*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 증명서(입학시 1회)
	특별장학금	①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면학분위기 조성 및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②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③ 기타의 사유로 총장이 정한 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	*장학금신청서 *지급사유에 따른 관련서류

구분	장학금종류	지급 기준 및 장학금액	제출서류
한라성적 우수 장학금	토익성적우수 장학금	① 직전학기 성적이 4.0이상이면서 아래 기준을 부합하는 자         ② 정규토익 성적은 매학기 응시기준이며, 휴학 중 응시한 성적은 제외         ③ 장학금액은 토익, 토익스피킹 성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. (개정 2025.1.03.)         구분       A급       B급       C급         900점 이상       850점 이상       800점 이상         장학금액       수업료 100%       수업료 70%       수업료 50%         구분       Advanced High       Advanced Mid       Advanced Low	*정규토익성적증명서
		장학금액 수업료 100% 수업료 70% 수업료 50%	
학업장려 장학금(개정 2025.1.03.)	신입생장학금 (성적우수장학금/ 특별장학금)	수시모집/정시모집 모집요강에 의해 지급한다.	
	면학장학금	① 편입생은 모집요강에 따라 지급한다.(개정 2025.1.03.) ② (삭제 2025.1.03.) ③ 복학예정자, 재학생 중 학업장려 목적으로 등록금 지원(신설 2025.1.03.)	
한라 특기자 장학금	축구부 우수선수 장학금	축구기량 뿐만 아니라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 중 축구부 감독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한다. 단,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해 장학금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추천이 가능하다.	
	특기자장학금	특기자로 입학한 재학생 중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자(대회등급 및 수상성적에 따라 결정)에게 지급한다.	*수상증명서
한라 교직원 장학금	교직원자녀 장학금	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(단, 비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포함하고 외국인 교원은 제외함) 및 정규직원(무기 계약직 포함) 의 직계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. ※ 교직원자녀장학금 수혜 시 근로소득에 포함됨을 감안하여, 성적장학금등 타 장학금 지급대상이 될 경우 타 장학금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.	*장학금신청서 *주민등록등본
	한라복지 장학금	① 명예퇴직자의 자녀로서 퇴직 시 본교에 재학 중에 있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② 정년퇴직 및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 ③ 직전학기 성적이 2.5이상인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.	*재직증명서

구분	장학금종류	지급 기준 및 장학금액	제출서류
	한라 FAMILY CARE 마일리지 장학금	한라 패밀리케어 제도의 장학마일리지를 취득한 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	*통장사본
	학습역량강화 장학금	학습역량강화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	
	글로벌인재 장학금	해외어학연수 및 해외문화탐방 등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	
	봉사장학금	교내외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	*봉사실적증명서
기타 장학금	학생활동장려 장학금	학생활동 및 학생행사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	
	만도엘리트 장학금 삭제 (2025.1.03.)	삭제 (2025.1.03.)	
	상공회의소 회원가입업체 직원장학금	① 한라대학교-원주상공회의소 간 산학협력 및 취업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에 근거 상공회의소 회원업체로 가입한 업체 직원(본인)이 우리대학 진학시 장학금을 지급한다. ②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경우 수업료의 40%를 등록금고지서에 우선감면 처리한다.	
	기타장학금 (각 부서)	<ul> <li>① 교내 각 부서(사업단포함) 예산으로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각부서의 지급기준을 충족한 재학생에게 교재비, 상금, 경비지원, 기숙사비, 어학지원비, 봉사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각 부서장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</li> <li>② 해당부서는 장학금 요청시 장학금명, 선발기준, 선발결과, 지급성격, 금액, 예산 등을 명시하여 학생지원과의 합의를 거쳐 지급한다.</li> <li>부서에 별도의 장학금 지급 내규가 없는 경우 해당 공문으로 내규를 갈음한다.</li> </ul>	*해당 부서 지급기준에 따름

구분	장학금종류	지급 기준 및 장학금액	제출서류
	평생교육 장학금	① 미래라이프융합대학 신입생 또는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.0이상인 자(신입생은 첫 학기에 성적기준 미적용)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. (초과학기자 제외) (개정 2024.8.10) ② 학점 당 등록자는 장학혜택에서 제외된다.	
기타 장학금	평생학습장려 장학금	③ (삭제, 2024.8.10) ④ 타 장학금 이중수혜는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 ⑤ 평생학습장려장학금과 평생교육장학금 중 평생학습장려장학금이 우선 적용된다. ⑥ 장학금은 등록고지서 우선감면 처리한다. ⑦ 미래라이프융합대학 재학생은 학업성적에 의한 교내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 (개정 2024.8.10)	